

# 붙임1 | 물품관리규정 개정(안) 신·구대조표

| 현행  | 개정(안)   | 비고  |
|---|---|---|
| 제6조(물품관리관 등 업무)<br>① (생략)<br>1~5. (생략)<br>6. <호 신설> | 제6조(물품관리관 등 업무)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1~5. (현행과 같음)<br>6.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 정립  | ▪ 물품관리관 업무 추가 명시  |
| <조 신설>  | <b>제7조(물품관리기준)</b> ① 물품관리관은 체육회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br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 ▪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("23.12.)에 따른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조 신설                    |
| 제7조(취득) (생략)  | 제7조의2(취득) (현행과 같음)  | ▪ 조항 순서 조정에 따른 조 번호 수정  |
| 제11조(사용)<br>① (생략)<br>② <항 신설>                      | 제11조(사용)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.   | ▪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("23.12.)에 따른 <b>내용연수 경과 물품 연장사용 노력 강화</b> 항 신설              |
| 제19조(불용품의 폐기) (생략)<br>② <항 신설>                      | 제19조(불용품의 폐기)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불용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 처분하여야 한다.<br>1. 유찰 등으로 인한 매각 지연<br>2. 다른 규정에 의거 불용품 처분시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<br>3. 기타 특별한 사유라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| ▪ 항 번호 수정<br>▪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("23.12.)에 따른 <b>불용물품의 장기 미처분 방지 기준 마련</b> 조 신설 |
| <신설>  | <b>부칙(2024.00.00.)</b>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 | ▪ 규정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 |